

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송정빈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45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2월 7일

발 의 자 : 송정빈, 이동현, 김제리, 유정희,
이광성, 김정환, 이영실, 김춘례,
김화숙, 송아량, 김경우, 오현정,
문병훈, 이호대, 한기영, 오중석
의원 (16명)

1. 제안 이유

최근 고령층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, 현행 조례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을 포괄적이고 개념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시 차원의 실제적 지원이 수요대비 저조한 상황임. 이에 노인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구체적 지원 사항과 시설규모 및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한 차등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.

2. 주요 골자

가. 시장이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(안 제14조제 2항 신설)

나. 시장이 노인복지시설의 규모 및 노후화 등을 평가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4조제3항 신설)

3. 참고 사항

가. 관련 법령 : 「노인복지법」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등

나. 예산 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.

1. 시설운영비
2. 여가·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3. 냉난방기, 체력단련기구 등 노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

③ 시장은 노인관련 시설의 이용 인원, 시설규모 및 노후화, 관리 실태 및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하여 노인관련 시설에 차등 지원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)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	제14조(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<u>시장은 제1항의 지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.</u> 1. <u>시설운영비</u> 2. <u>여가·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</u> 3. <u>냉난방기, 체력단련기구 등 노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</u> ③ <u>시장은 노인관련 시설의 이용 인원, 시설규모 및 노후화, 관리 실태 및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하여 노인관련 시설에 차등 지원할 수 있다.</u>

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조제2항을 신설하여 냉난방기, 체력단련기구 등 노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(제3호)에 따라 비용 발생

※ 동 조례안에 제14조제3항 신설하여 노인관련 시설 차등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, 기존의 지원대상을 예산범위 내에서 차등지원할 경우 별도의 비용 발생하지 않음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대상

- 냉난방기, 체력단련기구 등 노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 지원 비용(안 제14조제2항제3호)

나. 전제

- 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
- 2018.12.31 이후 서울시 노인복지시설의 수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
-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경우 노인복지주택, 유료양로원 등 미지원시설을 제외하고 냉난방기 및 체력단련기구 지원은 ‘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’으로 기추진(’19년도 예산 : 1,430,552천원)되어 비용추계에서 제외
-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되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수가를 지급받아 운영하고 있으므로, 운영비 등 미지원(장기요양보험 수가 지급대상이 아닌, 운영비를 기 지원중인 재가노인지원센터 28개소의 경우 방문서비스이므로 냉난방기, 체력단련기구 미지원) 전제
-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경우 노인종합복지관 냉난방기 및 체력단련기구 지원은 ‘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’으로 기추진(’19년도 예산 : 3,467,827천원)되어 비용추계에서 제외

※ 운영비 등 기타 지원은 현행과 같이 ‘1자치구 1노인복지관 지원 원칙, 시립복지관이 없는 기준 재정수요충족도 90%미만 자치구 구립노인복지관 지원 원칙’(2019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계획 참조)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

-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소규모노인복지센터 47개소 및 경로당 3,396개소의 경우 개소당 러닝머신 1대, 탁구대 1개(탁구채 포함)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(지원단가는 나라장터 기준 실제 구입사례 준용)

※ 러닝머신 2,189천원/대, 탁구대 407천원/개, 연습용 탁구채 25천원/개(4개 구입)

※ 에어컨은 시중가 평균가격대(56.9제곱미터/대기업생산/ 스탠드형 기준)1,200천원/대

- 물가상승률 미반영

다. 추계기간 : 5년

라. 방법

- 2018.12.31 기준일 이후 서울시 소규모노인복지센터 47개소 및 경로당 3,396개소 (총 3,443개소)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개소당 러닝머신 1대, 탁구대 1개(탁구채 4개 포함)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에어컨 등 냉난방기의 경우 기 설치되어 있으나, 매해 10%씩 노후설비 교체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
- 지원단가는 나라장터 기준 실제 구입사례(체력단련기구) 및 시중가(에어컨) 준용
- 추계기간 5년 중 체력단련기구는 1차년도 일괄설치, 에어컨 등 냉난방기는 기설치 설비 중 매해 10%씩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추계

3. 비용추계의 결과

- 총 비용 = 11,346,328천원(연평균 2,269,266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					
	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합계	
세입	-	-	-	-	-	-	-	
	소계(a)	-	-	-	-	-	-	
세출	냉난방기 및 체력단련기구 (조례안 제14조 제2항)	냉난방기	412,800	412,800	412,800	412,800	412,800	2,064,000
		체력단련기구	9,282,328	0	0	0	0	9,282,328
	소계(b)	9,695,128	412,800	412,800	412,800	412,800	11,346,328	
□ 총 비용(b-a)		9,695,128	412,800	412,800	412,800	412,800	11,346,328	

4. 덧붙이는 의견 : 없음

5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정책조사팀장 여차민

주 무 관 채소영

☎ 02-2180-7944

e-mail : liz1998@seoul.go.kr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비용요소

- 냉난방기, 체력단련기구 등 노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 지원 비용

2. 세부추계내역

- 총 비용 = $\sum_{i=1}^5$ (연간 냉난방기 구입 비용)_i + 체력단련기구 구입 총 비용

※ i = 비용추계 연차(2020~2024년)

- 연간 냉난방기 구입 비용(≒ 412,800천원)

$$= \text{구입단가} \times \text{개소당 1대} \times \text{지원 개소수}$$

$$= 1,200\text{천원} \times 1\text{대} \times 344\text{개소}$$

$$= 412,800\text{천원}$$

- 체력단련기구 구입 총 비용(≒ 9,282,328천원)

$$= \text{구입단가} \times \text{개소당 1식(런닝머신 1, 탁구대 1, 탁구채 4)} \times \text{지원 개소수}$$

$$= 2,696\text{천원} \times 1\text{식} \times 3,443\text{개소}$$

$$= 9,282,328\text{천원}$$